

제122조 질문 · 조사



제122조의 요약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행사와 해당 대상자의 범위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경영·관리책임자, 납세의무자와 거래있는 자, 동업조합 등
-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 제시해야 하며 수입금액 조사결정 자료제출 요구가능함.

● 제122조 [질문 · 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I. 본 조의 개요

① 본 조의 개요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당해 관련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고 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라 한다.

질문조사상대방은 과세관청의 과세와 징세업무와 관련된다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납세의무없는 자 혹은 당해 납세의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

② 본 조 규정의 이유

질문조사권은 정당하고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권한인바, 법인세법 이외의 각 세법에서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과세자료가 복잡하고 납세관련자들의 숫자도 엄청나며 국제적인 현실에서 직접 당사자로부터 과세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질문조사권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II. 질문조사

1. 질문조사의 대상자 (법 제122조제1항)

① 질문조사대상자 유형

질문조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이밖에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자도 포함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제2호·제3호 ⇨ 원천징수의무자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자
이들은 직접 납세의무와는 관계 없으나 간접적으로 그들을 질문조사함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을 파악하는데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또 그들에 대한 과세자료보고상황을 검토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 제4호 ⇨ 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경영책임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리·경영책임자)
- ◎ 제5호 ⇨ 납세의무자 자신이나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는 자
- ◎ 제6호 ⇨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관련정보가 있음)
- ◎ 제7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② 금융기관 금전대부조사 등

이밖에 금융기관들의 금전대부에 대한 조서나 서류도 납세의무자와의 거래관계서류의 하나이므로 역시 질문조사대상이 된다.

2. 질문조사권의 의미와 조사권자

① 질문조사권이 있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만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관청자체는 질문조사할 수 없고 종사하는 세무공무원 및 세무서장 등 자연인 신분으로서의 질문조사권이 있는 것이다.

② 세무관서 종사공무원과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명의 제시가 없으면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 수입금액조사결정의 필요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5조 【질문·조사】

-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②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질문조사권 행사범위와 시기

① 질문조사권의 행사범위와 권한남용

본 조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있어야 한다. 즉, 필요도 없는 질문·조사를 하면 권한남용이 된다. 권한남용에 대하여는 행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질문·조사가 성실한 신고납세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단이라는 차원에서는 신고가 없거나 신고의 적부를 심사해 보아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질문조사방법과 유형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조사결정하는 경우의 조사에 관한 권한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와는 그 의미와 방법 및 절차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전자를 질문조사, 후자를 범칙조사라 하며 전자인 질문조사는 그 조사권한의 근거가 법인세법에 있고 조사대상이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며 질문조사의 권한한계가 질문 검사·제출 요구 등 임의성에 국한되어 있으나 후자인 범칙조사는 조사권한이 조세범처벌절차법(동 법 제2조)에 근거하고 조사대상이 범칙사건이며, 조사방법이 신문·압수 또는 수색으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③ 질문조사의 시기 및 범위

질문조사는 과세기간중 혹은 과세기간 종료후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난 것에 대한 질문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질문조사대상은 장부·증빙 기타 관련서류 모두가 대상이 되며, 당해 법인의 임직원 누구나 조사에 응해야 한다.

4. 질문조사권의 요과

① 행정명령적 질문조사권

질문조사권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법 체계상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출명령에 대하여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권한범위초과의 질문조사권

질문조사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 범위와 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조사원증이 없는 경우도 거부할 수 있으며, 위법한 요구·직권남용의 요구에 대하여도 거부할 수 있다.